제이엘 FICC SERVICE

수입식품 통관안내

Food Import & Customs Clearance Consulting Service

제이엘합동관세사무소

JL CUSTOMS & TRADE SERVICE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식품수입 전문 컨설턴트 제이엘합동관세사무소입니다.

식품은 일반수입물품과 달리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수입 및 관련 통관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아마도 식품을 수입해 보셨던 분들은 관련기관(식약청, 검역원 등)과의 마찰로 인하여 한, 두번은 어려움을 겪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빈번한 개정이 있는 식품관련 관계법령들을 매 수입시 마다 혹은 새로운 아이템의 수입시에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품수입 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통관 가능여부검토, 한글스티커 확정 및 부착 등 부대업무의 원활한 진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이엘의 식검대행서비스는 단순 신고대행만 진행하는 타사의 식검대행서비스와는 다릅니다.
계약단계부터 수입가능성 검토, 스티커 부착업무, 식약청과의 업무협의, 세관통관업무 등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Total Service입니다.

제이엘은 지난 수년간 진행해 온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사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귀사의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입식품 통관 개요

식품은 그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관계 법령과 업무처리 기관이 다릅니다.
이로 인해 일반인이 관련기관을 상대로 업무(검역/검사/수입신고)를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식품은 통관절차를 이행하는데 특정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특정요건은 크게 **[검사 와 검역]** 으로 구분되며 품목에 따라 검사와 검역이
모두 필요한 경우와 검사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

-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검역

- 가축전염병예방법
- 식물방역법
-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신고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립 수산물 품질 관리원

ONE STOP SERVICE – 제이엘 FICC SERVICE

Food Import & Customs Clearance Consulting

01 Readyfor impotation 수입 전 준비사항

1. 자격요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와 수입식품의 용도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01 일반식품 • 농수산물 및 기구용기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02 건강기능식품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03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축산물 및 가공품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04 제조 가공업자

식품을 수입하여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국내에 판매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 · 구청에 식품 제조 · 가공업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TOTAL SOLUTION – 제이엘 FICC SERVICE

Express Logistics
Foreign Exchange & FTA
Trade Consulting

01 Readyfor importation
수입 전 준비사항

2. 구비서류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관청에서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❶ 공통서류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식품제조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제조회사에서 작성하고 품질담당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 성분 및 함량표 (Ingredient List)
- 유전자재조합식품검사증 (주요 원재료 5가지 중에 콩 또는 옥수수가 포함된 식품)
- 제조국 정부에서 발행한 BSE Free Certificat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식품의 원재료 중 '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이 있는 경우)
- 유기농인증서 (제품에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❷ 영양성분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중 특수용도식품, 과자류(식빵 ·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견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잼류), 면류, 레토르트 식품 및 음료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❸ 기타 서류

·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국 정부발행 식물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
·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국 정부발행 검역증(Health Certificate) 원본이 필요합니다
· 인도네시아,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수산물 수입시에는 수출국정부발행 「위생증」이 필요합니다.
· 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의 원료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품목제조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가공식품
PROCESSED FOODS
건강기능식품
HEALTH FUNCTIONAL FOODS
농수축산물
FICHERY PRODUCTS
LIVESTOCK PRODUCTS
AGRICULTURAL PRODUCTS
기기용기및포장
UTENSILS, CONTAINERS
& PACKAGES
유기농식품
ORGANIC FOODS

02 Food Import & Customs Clearance Process
수입식품 통관절차

수입식품이 국내에 반입되면 식품검사 관련기관(식약청, 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신고를 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세관의 수입통관을 거쳐, 반출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다만, 축산물이나 농산물과 같은 일부 제품은 식품검사 관련기관에 신고하기 전에 검역절차를 이행한 후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식품검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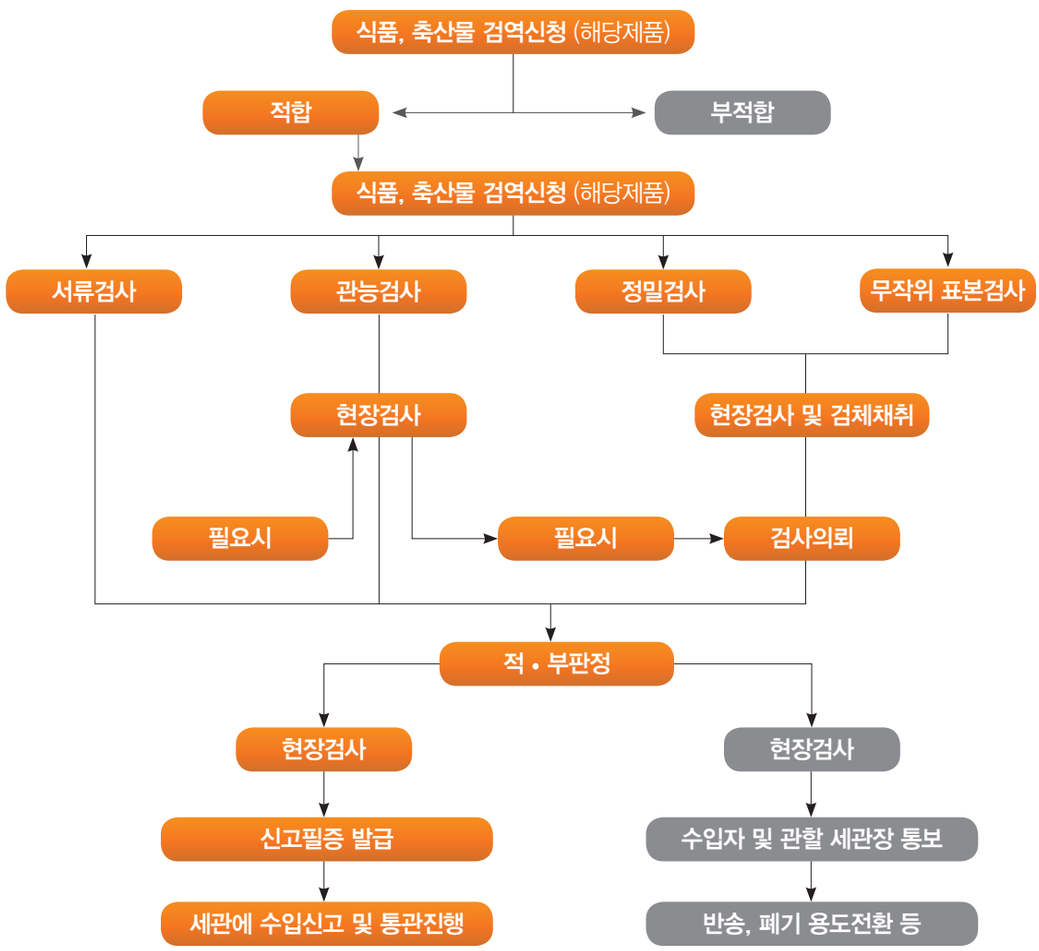

03 Notice for food importation
식품수입시 유의사항

❶ 기준/규격 검토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의 성분배합비율상 적합성 여부
- 제조방법의 적합성 여부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건강기능식품 공전상 성분규격의 적합성 여부
- 식품 원재료의 사용 가능성 여부

국내에 반입된 식품이 관련법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반송, 폐기 또는 용도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❷ 한글표시

기준, 규격을 검토한 결과 수입이 가능한 식품은 그 유형을 분류하여 표시기준에 맞도록 한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한글표시 Label을 다시 부착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 인건비 및 창고료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며, 납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2011. 5. 11)
- 수출국에서 유통되는 물품에 대하여 한글라벨을 부착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

❸ 과대광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자국 내에서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되어 자국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이 인체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효능, 효과를 표시하거나, 기타 식품에 적절치 않은 표현들을 제품라벨에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원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판단되는 부분의 문구를 국내의 보세구역에서 제거해야 하며, 심한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04 Services of L CUSTOMS BROKERAGE
제이엘합동관세사무소의 Service

01 필요서류송부

제조공정도,
성분함량표,
원포장등 송부

02 수입가능성 및 예상소요비용 통보

관련법 및 식품공전상
기준 및 규격 검토
수입 후 예상소요비용
(식검비용, 창고료, 세금 등)

03 물품수입

수출자에게 물품 주문
및 국제운송

04 식검진행

관련기관 (식약청 등)에
수입신고 검역이 필요한
물품 (축산물, 농산물)은
신고전 검역 진행

05 세관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

식검완료 후 관세청에
수입신고 진행
수입신고수리 후
관련 제세금 납부

06 물품반출

최종목적지까지
국내배송

❶ 수입가능성 검토

식품은 일반물품과 달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식약청에 식품 등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은 국내로 반입할 수 없으며, 반송 또는 폐기를 해야 합니다. 제이엘 FICCS는 귀사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한국으로 발송하기 전에 수입가능성을 검토해 드립니다. 신규 제품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수입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수입진행을 하셔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❷ 한글표시내용 컨설팅

모든 식품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한글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한글표시를 다시 해야 하며, 이로 인해 비용, 시간의 손실과 납기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이엘 FICCS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한글표시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제공하며, 고객이 요청 시 인쇄 및 한글표시 부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❸ ONE-STOP 서비스

제이엘 FICC는 식품의 수입가능성 검토 단계부터 식약청에 식품수입신고 시점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해드립니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경우 검역절차도 대행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관 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해 드리는 ONE-STOP SERVICE를 제공합니다.

❹ 관세/무역 통관서비스

제이엘합동관세사무소는 고유 업무인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이외에 식품 등 수입에 관련된 업무, 무역 컨설팅, FTA컨설팅, 외환거래 컨설팅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사무실

인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87, 사업지원센터 414호
일반통관 : 032-744-7250 **특송통관** : 032-744-7258 / 032-744-7266
FAX : 032-744-7270 / 032-744-7271